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460,175,100	13,805,253
일반회계		392,768,550	11,783,057
특별회계		67,406,550	2,022,197
	기타특별회계	67,406,550	2,022,197
	상수도사업특별회계	17,119,344	513,580
	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	39,275,599	1,178,268
	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511,278	15,338
	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	4,247	127
	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	230,796	6,924
	농 어 촌 소 득 지 원 기 금 특 별 회 계	4,543,953	136,319
	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	5,721,333	171,640

- 제 2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-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- 제 4조 계속비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-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- 제 6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· 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9,362,861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2020년도 세입 · 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